의안번호		제 460 호
의	결	년 월 일
연 월	일 일	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1월 1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460

제출연월일: 2023년 11월 17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자율신설기구(과학인재국) 존속기한 연장
 - 2023년 12월 31일까지 → 2024년 12월 31일까지
- **3. 의안전문** : 붙임
- 4.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	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
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	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부칙	부칙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	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
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은 2023	<u>2024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<u>년 12월 31일</u>

관련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 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9조의2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~ ⑤ (생략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4항제1호

이사 유

- 본 조례안은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 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